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68
----------	------

발의연월일 : 2017. 3. 29.

발의자 : 노회찬 · 추혜선 · 심상정
윤소하 · 이정미 · 김종대
진선미 · 김종민 · 김종훈
윤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와 가석방 적격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11월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2015년 11월, 12월에 있었던 19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6, 7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취지하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이에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와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와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7조(징벌위원회) ① ~ ⑦ (생략) <u><신 설></u></p> <p>⑧ 제1항부터 <u>제7항까지</u>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7조(징벌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p> <p><u>⑧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p> <p><u>⑨ -----제8항-----</u></p> <p>-----</p> <p>-----</p> <p>-----.</p>
<p>제10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u><신 설></u></p> <p>③ (생략)</p>	<p>제10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p> <p><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p>